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경로당 신축·재건축·증축·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경로당 신축·재건축·증축·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지원 기준 규정 신설 (안 제5조제1항제6호, 제5조제3항) : 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 준용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노인복지법」,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2015. 11.5. ~ 11.21. (21일간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경로당 건물의 신축· 증축· 리모델링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·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5조제1항제6호, 제5조제3항 규정을 신설
 - 경로당 신축 ·재건축· 증축·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, 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조례」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

❍ 검토 결과 관계법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사업비 지원에 있어 업무의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2. 제정이유
 ○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○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·기능·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2조 및 제3조)
 ○ 위원의 임기·직무·회의·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～제8조)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다. 기　　타
 1) 입법예고 : 2015. 11. 12～ 12. 2(의견없음)
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5. 검토의견
 ❍ 본 조례안은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 ❍ 주요 제정 내용은
 -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 구성 되어 있으며
 -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
 -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
 -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❍ 검토결과 상위법인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 맞추어 정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